

의안번호	2217027
의 퇴 인	윤준병 의원
회 답 일	2026. 8. 6.
추계번호	26B1495

헴프산업 육성 및 헴프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헴프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4억 7,500만원(연평균 9,5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종합계획의 수립 등 (안 제5조)	150	-	-	-	-	150	30
헴프산업 실태조사 등 (안 제6조)	325	-	-	-	-	325	65
합계	475	0	0	0	0	475	95

주: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 실시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연구용역 및 실태조사의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헴프산업의 육성 및 헴프의 안전관리(이하 “헴프산업의 육성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종합적인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3항)	재량규정
2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산업의 육성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3항)	의무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생산자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헴프의 우량 종묘 개발·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토지의 조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제4항)	재량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3	안 제6조(헴프산업 실태조사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	의무규정
4	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헴프의 재배·육종과 헴프제품의 제조·판매·수출입·운송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 제8조에 따른 헴프산업진흥원,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5	안 제8조(헴프산업진흥원)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제1항)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6	안 제26조(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산업의 집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제1항)	재량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7항)	재량규정
7	안 제27조(헴프취급자의 보고)	헴프취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한 헴프취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헴프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제5항)	재량규정
8	안 제30조(헴프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헴프추적관리시스템과 제29조에 따른 헴프추적관리정보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9	안 제3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원 또는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2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미대상: 헴프산업의 육성 및 헴프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적인 책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안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제1항) —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은 자체적으로 수립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4항 및 제5항) — 현 시점에서는 헴프의 우량 종묘 개발·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보급, 재배에 적합한 토지의 조사 등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보조·융자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어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3	안 제6조(헴프산업 실태조사 등)	○	• 유사사례 및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참고
4	안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규모, 전문인력 양성 분야·대상, 교육훈련 범위·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 및 지원방안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5	안 제8조(헴프산업 진흥원)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헴프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는 헴프산업진흥원의 규모,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6	안 제26조(헴프산업 클러스터 지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헴프산업의 집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헴프산업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정된 헴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헴프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될 지역 수, 지원 기준 및 내용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7	안 제27조(헴프취급의 보고)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은 헴프취급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헴프, 원료물질 및 헴프 공정부산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고를 한 헴프취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헴프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헴프추적관리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30조(헴프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제정안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이를 위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제정안은 헴프추적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함
9	안 제33조(권한의 위임)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 시점에서는 업무 위탁 대상 기관, 업무 위탁 범위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 수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1억원(연평균 2,000만원)으로 추계
 - 추계기간 중 첫해에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2]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

(단위: 백만원)

사업내용	연도	금액
제3차 쌀가공 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 기본계획('24~'28) 수립 기초 연구	2023	100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3]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	100	-	-	-	-	100	20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한 것으로, 실제 헴프산업의 육성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헴프산업 실태조사(안 제6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헴프산업 육성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유사사례를 참고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 및 헴프산업 육성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억 2,500만원(연평균 6,500만원)으로 추계
 - 헴프산업 실태조사를 종합계획 수립 주기와 같이 5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표 4] 농림축산식품부의 유사 실태조사 관련 사례

(단위: 백만원)

실태조사	2026년 예산
쌀가공산업 실태조사	200
말산업 실태조사	450
평 균	32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자료

[표 5]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8~2032년

(단위: 백만원)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연평균
헴프산업 실태조사	325	-	-	-	-	325	65

주: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실제 실태조사 실시 주기·방법 및 규모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김성원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성원	02-6788-4650	holystone@assembly.go.kr